

HIRA ISSU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에 따른 각국의 의료보장 대응 상황

엄혜은 주임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평가연구부

| 키워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원격의료, 한시적 보험급여, 건강보험료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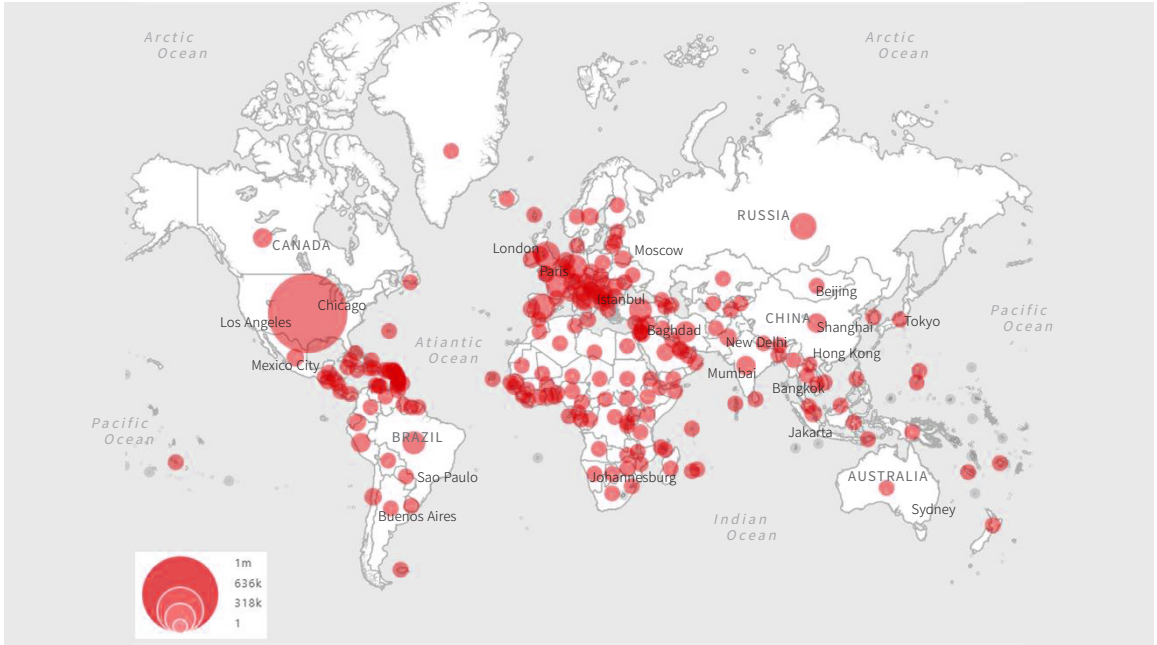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확산으로 215개 국가 및 지역에서 4,013,728명이 감염되고 278,993명이 사망하였다(2020. 5. 11. 기준, 세계보건기구).

-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¹⁾가 대만, 영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감염 확산이 지속되자 WHO(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감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바 있다.
- 대만을 비롯한 해외 국가들은 감염환자 유입차단을 위해 국경 폐쇄, 특정 항공노선 운항금지, 입국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국 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 간 이동 통제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 한국어 약어는 코로나19이며 영어로는 COVID-19임

- 한편 의료보장체계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은 2월 24일부터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²⁾를 시행하고 있다. 본 편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료보장 체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코로나19의 세계적 발생 현황

자료: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검색일자 2020.5.11.

주: 원의 크기는 환자발생규모를 의미함; m: 백만 명, k: 천명

[표 1] 국가별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단위: 명)

국가명	환자발생 수	사망자 수
한국	10,909	256
영국	219,183	31,855
프랑스	139,063	26,380
중국	82,918	4,633
캐나다	67,996	4,728
일본	15,798	621
대만	440	6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20.5.11.

2) 2020년 3월부터 5월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데 주소지의 특별재난지역 여부, 가입자의 종류(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음

2. 국가별 대응 사례

대만 - 건강보험료 이월 및 분할 납부 시행

- 대만은 2020년 2월부터 7월(6개월 분)까지 청구되는 보험료의 이월과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코로나 19 유행에 따라 휴무 등 근무시간 단축을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또는 심각한 전염성 폐렴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특별규정³⁾ 제9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향을 받은 산업(또는 사업)과 관련된 피보험자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간 추가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추가지원 대상자는 납부를 연기하더라도 연체료가 면제되고 미납비용은 무이자로 전국민건강보험 구호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별도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영국 - 자국민을 위하여 병행수출을 금지하는 의약품 선정

- 영국은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자국 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럽 전역에서 약품의 수요가 높은 80가지 중요약품(항생제, 인슐린, 아드레날린, 모르핀 등)에 대한 병행수출⁴⁾을 금지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 제조된 인공호흡기의 최소 사양과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영국은 이전부터 NHS앱⁵⁾으로 의사, 간호사와의 원격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하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외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만성질환자 등 반복 투약이 필요한 약의 처방과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조제된 약을 집에서 수령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부의 특별 규제 1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함

4) 병행수출이란 영국에 출시된 의약품을 유럽경제지역내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함

5) NHS (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의료서비스)에서 2018년 말 개발, 2019년 7월 본격 보급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GP (담당의)를 등록한 만 13세 이상 연령에서 사용할 수 있음. COVID-19에 대한 상담, 반복처방전 신청, 진료예약, 증상확인, 의료기록 확인 등의 기능이 있음

일본 - 환자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한 진료보수 산정 예외사항 적용

- 일본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입원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의료법상 허가 병상수를 초과하더라도 진료 보수를 감액하지 않으며 환자가 회의실과 같은 병실 이외의 장소에 입원하더라도 병동입원기본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등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전화(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의약품의 처방, 약국조제로 산정이 가능하며, 환자에게 전화로 적절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충분한 처치재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재택요양지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 임시휴교에 따른 자녀육아로 간호사 근무에 공백이 생기는 등 간호인력 배치비율에 변동이 있어도 변경신고를 받지 않으며, 일본형 혼합지불제도(DPC/PDPS)⁶⁾ 참여병원에 2020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례는 DPC(혼합형지불제도)적용에서 제외된다.
- 코로나19에 대한 PCR(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는 3월 6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의료기관⁷⁾의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초진·재진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검사비용(4회, 18,000엔)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캐나다 - 원격의료시스템 활용 및 임시보험 적용

- 캐나다 유콘주에서는 코로나19 관리를 위하여 유콘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독시닷미(Doxy.me) 플랫폼을 이용하여 3월 23일부터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외국인인을 포함한 메디케어⁸⁾ 자격 만료자가 임시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임시 의료서비스는 7월 31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뉴브런즈윅주에서도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메디케어 자격과 상관없이 응급치료가 가능하며 검사누락 방지를 위하여 무보험자에게도 코로나19 관련 서비스 비용을 보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 중 메디케어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6) DPC (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PDPS (Per-diem Payment System): 진단군 분류에 따른 1인당 정액보수 산정 제도로 일당정액제와 행위별 수가제가 혼합된 형태임

7) 충분한 감염예방대책을 마련한 감염지정 의료기관 또는 감염병 환자를 전담하는 외래 진료소를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도도부현이 인정한 의료기관에 한함

8) 캐나다의 공적건강보험인 메디케어는 10개 자치주와 3개 준 자치주별로 다른 건강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별 거주 자격에 따라 연 1회 소득신고에 따른 보험료가 책정됨. 다른 주로 이사하는 경우 보험증 재발급 필요

-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는 3월 15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긴급·응급 수술만 시행토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3월 16일 이후에 예약된 수술은 일정이 취소된다. 단, 암 치료, 투석, 입원환자 재활 치료에 필요한 의료이용은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주에서는 유학생,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⁹⁾의 건강보험(Medical Care Plan) 적용기간을 6월 30일로 연장하였다.

프랑스 - 원격의료의 급여조건 개선

- 프랑스는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출산준비 교육 등 조산사의 임신부 원격지원 관리 활동을 3월 31일부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70세 이상 고령자가 원격 화상진료 방식 이외에 전화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 또한 전국 모든 병원의 3월 예정 수술(응급수술 제외)을 취소하여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위한 병상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립 및 사립병원의 집중치료실 개설을 승인하였다.

3. 시사점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연한 보건 의료 정책 실시

- 국가별로 코로나19의 발생시기와 유행상황에 따라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방식을 채택하는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연한 보건 의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불필요한 외출을 제한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의 발생은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
- 여러 해외 국가는 임신부 및 고령자와 같은 고위험군과 무보험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험급여 기간 및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대처를 하고 있다.
- 또한 병실 외의 공간을 활용한 입원치료 실시 등 우리나라가 경증의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수가를 마련한 것¹⁰⁾과 같이 감염병을 관리하는 실제 현황을 반영한 의료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9) 유학생 및 근로자(외국인 포함)는 학생보험이나 직장보험(사설보험)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보험증(카드)에 만료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함

10) 생활치료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수가로 해당기관은 3월 2일부터 청구 가능함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2020.2.25. <http://www.hira.or.kr>(검색일자 2020.4.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http://www.hira.or.kr>(검색일자 2020.4.3.)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코로나19 경감' 및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추가징수금 10회 분할안내. <https://www.nhis.or.kr>(검색일자 2020.4.23.)
- 대만 보건부 홈페이지. 因應COVID-19(武漢肺炎)疫情期間健保費緩繳相關協助措施. https://www.nhi.gov.tw/Content_List.aspx?n=A779B92A952D89B0&topn=787128DAD5F71B1A(검색일자 2020.4.13.)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 국외발생동향. <http://ncov.mohw.go.kr>(검색일자 2020.5.11.)
-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https://www.who.int>(검색일자 2020.5.11.)
- 영국 정부 홈페이지. Medicines that cannot be parallel exported from the UK. <https://www.gov.uk/government/news/crucial-medicines-protected-for-coronavirus-covid-19-patients>(검색일자 2020.4.13.)
- 영국 정부 홈페이지. Specification for ventilators to be used in UK hospitals during the coronavirus (COVID-19) outbrea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ecification-for-ventilators-to-be-used-in-uk-hospitals-during-the-coronavirus-covid-19-outbreak>(검색일자 2020.4.13.)
-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nhs.uk>(검색일자 2020.4.22.)
- 일본 후생노동성. 제452회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자료.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伴う医療保険制度の主な対応状況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hingi/shingi-chuo_128154.html(검색일자 2020.4.13.)
- 중앙일보. 전문가들도 경계위기 올 줄 몰랐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 2020.3.23.
- 캐나다 유콘주 홈페이지. New virtual care options for Yukoners. <https://yukon.ca/en/news/new-virtual-care-options-yukoners>(검색일자 2020.4.13.)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홈페이지. Medical Services Plan Response to COVID-19.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health-drug-coverage/msp/bc-residents/msp-covid-19-response>(검색일자 2020.4.13.)
-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홈페이지. <https://www2.gnb.ca/content/gnb/en/departments/health/MedicarePrescriptionDrugPlan.html>(검색일자 2020.4.13.)
- 캐나다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 홈페이지. Public Advisory: MCP Coverage Extended for Expired Cards. <https://www.gov.nl.ca/releases/2020/health/0331n04/>(검색일자 2020.4.13.)
- 캐나다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 홈페이지. Public Advisory: COVID-19 Restrictions Imposed for Regional Health Authority Facilities. <https://www.gov.nl.ca/releases/2020/health/0315n03/>(검색일자 2020.4.13.)
- 프랑스 보건부 홈페이지. 전화로 원격 상담. <https://solidarites-sante.gouv.fr/actualites/presse/communiqués-de-presse/article/teleconsultation-par-telephone>(검색일자 2020.4.13.)
- 프랑스 보건부 홈페이지. COVID19—Accompagnement lié à la grossesse et l'accouchement. <https://solidarites-sante.gouv.fr/actualites/presse/communiqués-de-presse/article/covid19-accompagnement-lie-a-la-grossesse-et-l-accouchement>(검색일자 2020.4.13.)
- 프랑스의 코로나판데믹 대응. <https://www.cambridge.org/core/blog/2020/04/06/frances-response-to-the-coronavirus-pandemic/>(검색일자 2020.4.27.)

HIRA ISSUE

발행일 2020.5.11.

발행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발행인 송재동

HIRA ISSUE는 국내외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진의 견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Tel. 033-739-0906 | www.hira.or.kr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청렴 세상

